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협동조합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최저한세 하향 등>

■ 용혜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938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협동조합등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최저한세 하향	3
2. 협동조합등에 대해 등록면허세 대도시 중과규정 적용제외	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용혜인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4. 12. 26.
3. 회부연월일 : 2024. 12.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협동조합은 주식회사 등 다른 법인과 달리 그 특성상 출자금 변동이 빈번하여 거의 매년 변경등기를 해야 하나, 최저한세 제외 적용을 받지 못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음.

협동조합이 세율(0.4%)에 따라 등록면허세 최저한세인 11만2,500원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출자금 증가액이 2,812만5,000원에 달해야 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출자금이 소액만 증가해도 등록면허세 11만2,500원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2023)에 따르면 전체 협동조합의 평균 출자금은 5,382만원이며, 연평균 310만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등록면허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협동조합이 대도시에 설립 및 변경 등기를 할 경우 대도시 중과세를 적용받아 3배에 달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함. 대도시 중과세는 수도권 인구유입과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그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음.

다만 수도권 주민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현행법에서는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협동조합은 예외를 적용받지 못함.

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이 만들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대도시 인구유입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은 본 법 취지를 벗어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임.

이에 협동조합에 대한 등록면허세 최저한세를 제외하여 제28조제1항제6호바목(건당 4만2백원)을 적용하고,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를 적용하여 협동조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8조 등).

Ⅲ. 검토의견

1. 협동조합등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최저한세 하향

개정안은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 등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이 112,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40,200원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2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8조(세율) ① (생략) <u><신설></u>	제28조(세율) ① (현행과 같음) <u>② 제1항제6호¹⁾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의 등기에 대한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4만2백원으로 한다.</u>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조합등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지방세법」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6. 법인 등기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 협동조합등의 개념 및 현황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2)에서는 협동조합등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의미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의미함.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2024. 5. 17.)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협동조합수(누계)는 23,892개로서 일반협동조합은 19,649개(82.2%), 사회적협동조합은 4,116개(17.2%), 연합회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다.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본전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

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건당 11만2천5백원

마.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건당 4만2백원

바. 그 밖의 등기: 건당 4만2백원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5.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를 말한다.

는 104개(0.5%)로 나타났다.

[협동조합 유형별 현황]

구분	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일반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소계	사업자 ¹⁾	다중이해 관계자 ⁴⁾	직원 ²⁾	소비자 ³⁾			
조합수 (개)	23,892	19,649	14,403	3,978	690	578	4,116	93	34
비중(%)	100.0	82.2 (100.0)	60.3 (73.3)	16.6 (20.2)	2.9 (3.5)	2.4 (2.9)	17.2	0.4	0.1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2024. 5. 17.

주: 1. 2022년 기준

- 1) 사업자협동조합: 공동판매를 목적으로 사업체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
- 2) 직원협동조합: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직원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
- 3) 소비자협동조합: 공동구매 목적으로 소비자들이 만든 협동조합
- 4)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생산자, 소비자, 판매직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유형을 조합원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

전체 협동조합 지역별 분포는 서울, 경기, 전북, 전남, 강원, 경북, 경남의 순이며, 서울, 경기의 비율은 39.3%임.

[협동조합 지역별 분포 현황]

(단위: 개, %)

구분	전국	서울	경기	전북	전남	강원	경북	경남	기타
전체	23,892	4,980	4,415	1,608	1,404	1,369	1,242	1,228	7,646
	(100.0)	(20.8)	(18.5)	(6.7)	(5.9)	(5.7)	(5.2)	(5.1)	(32.0)
일반 협동조합	19,649	4,106	3,439	1,385	1,206	1,136	1,014	943	6,420
	(100.0)	(20.9)	(17.5)	(7.0)	(6.1)	(5.8)	(5.2)	(4.8)	(32.7)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2024. 5. 17.

주: 1. 2022년 기준

(2) 검토의견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등이 납입·출자로 인해 자본·출자가 증가할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납입·출자가액의 0.4%(영리법인), 0.2%(비영리법인)를 등록면허세로 납입³⁾해야 하는데, 그 산출된 등록면허세액이 112,500원 미만인 때에는 최저한세인 112,500원⁴⁾을 납입해야 함.

최근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협동조합등의 평균 출자금은 2020년 4,763만원에서 2022년 5,382만원으로 2년간 619만원(연간 약 31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협동조합 등을 모두 영리법인으로 간주하더라도 실제 조합당 부담해야 하는 등록면허세는 평균 1.24만원(310만원*0.004) 가량으로 볼 수 있음.

그럼에도 「지방세법」의 최저한세 규정으로 인해 협동조합등이 최소 112,500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협동조합등이 다소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협동조합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최저한세를 112,500원에서 40,200원으로 낮춘다면, 협동조합 등의 등록면허세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에 해당됨

4) 최저한세 연혁: 9,000원(1976년)→ 50,000원(1979년: 경제변동에 부합하는 과세정책을 위해 인상)→ 75,000원(1991년: 장기간 고정된 등록세의 세율체계 조정)→ 112,500원(2014년: 물가상승에 따른 세율 현실화)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법인 본점의 단순 주소이전 등기도 112,500원으로 과세되고 있는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체계를 고려하면, 자본·출자 변경등기 시 최저한세를 112,500만원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현행 지방세법 등록면허세의 법인등기 관련 최저한도]

구 분	최저한도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설립과 납입, 자본증가 또는 출자)	건당 112,500원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설립과 납입,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건당 112,500원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	건당 112,500원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건당 112,500원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건당 40,200원
그 밖의 등기	건당 40,200원

만약 개정안이 반영된다면, 개정안은 계산된 등록면허세액이 112,500원 미만일 경우 40,200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체계적인 정합성을 고려하여 최저한세를 112,500원에서 40,200원으로 낮추는 방식(계산된 등록면허세액이 40,200원 미만일 경우 40,200원을 납부하도록 함)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2. 협동조합등에 대해 등록면허세 대도시 중과규정 적용제외

개정안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등이 대도시내에 설립될 경우에도 면허등록세의 대도시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임(안 28조제3항).

[illegible]

현행	개정안
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2. (생략)	----- - 2.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조합등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은 「지방세법」 제28조제2항의 대도시 중과규정의 취지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과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등은 지역주민이 설립하기 때문에 협동조합등의 설립에 따라 대도시 내로 인구가 유입되는 부작용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임. 따라서, 대도시 내 법인 설립시 산출된 등록면허세의 3배를 중과하는 조항을 협동조합등에 적용하는 것은 동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점을 제시함.

다만,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다른 조합⁵⁾ 및 일반법인 등도 중과 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에 중과세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에 대해서만 대도시 내 법인 설립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를 제외할 경우 과세형평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5) 농업·수산업·산림·신용·중소기업협동조합, 각종 공제조합, 영농·영어조합 등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협동조합 등이 경제적 실질에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과 유사함에도 대도시 중과규정을 배제할 경우 실질이 동일함에도 다르게 취급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입장임.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도시 내의 협동조합등의 설립은 인구유입의 부작용이 없다는 점 및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다른 조합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협동조합의 유형 중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는 영리성이 없으므로⁶⁾, 대도시 내의 다른 영리법인 들과는 차별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33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